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및 법령 정비 동향과 평가

박정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및 법령 정비 동향과 평가

박 정 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Contents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대상	2
II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및 특징	1. 2009년 헌법개정과 김정은 정권의 출범	5
		2. 201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6
		3. 2013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7
		4. 2016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8
		5. 김정은정권 하의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특징	12
III	김정은정권 하의 주요 법령 정비의 내용과 특징	1. 개 요	15
		2. 북한 법령의 분야별 제·개정 현황	15
IV	평가와 과제	1. 김정은 체제의 확립과 대내외 정책변화의 반영	33
		2. 북한 법령의 체계정합성 개선	34
		3. 북한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화	35
		4. 북한법령의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제고	36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헌법 및 주요 법령의 변화와 전망 분석
 - 김정은은 김정일이 구축하여 놓은 사회주의헌법상 국방위원회의 강력한 군부권력의 통제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북한권력체제를 장악함
 - 김정은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헌법상 국가기관체계의 변화내용과 대내외 정책전개와 관련한 법령의 개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도 국정운영의 법제도화의 동향을 파악함
 - 김정은 정권 이후 추진된 북한의 법제정비 검토를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향후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전망
 - 김정은 정권 시기인 2012년~2016년까지 북한의 헌법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 현황과 특징,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 및 법제도 변화, 정책적 입장과 변화 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남북 법제통합의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최신 북한 법령의 분석 필요
 - 남북한의 통일은 법치국가적인 측면에서 법질서의 통합이며, 이는 남북 법제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짐
 -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상호간의 교류협력과 법제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법제도와 최근 법제정비 방향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임
 - 따라서 김정은 정권 이후의 북한의 법제정비 분석을 통해 남북 법제통합을 위한 연구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 북한법 및 통일법제연구의 지평 확장
 - 통일 과정 및 통일 후의 통일국가의 완성과 관련하여 북한 법령 연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재, 정보의 부정확성 및 관심도 결여 등으로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 법제도분야의 통일논의를 위한 하나의 축으로 최신 북한 법령에 대한 종합적·유기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통일 연구의 시의성과 내실있는 분석의 틀을 확보해야 함

2.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대상

■ 북한 정권의 승계와 김정은 체제 구축

-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 이후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의 법제도적 정비 내용 분석
- 김정은은 권력승계 직후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위원장의 직위에 올랐음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의 의미와 내용에서 김정은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권력구조의 개편 내용
- 2016년 제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시된 김정은체제의 이념적 지향점과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령정비의 내용과 특징을 고찰

■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국면에서의 대내외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동향 분석

-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이 취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령의 추이과 동향을 파악
- 핵개발로 핵보유국가로의 인정을 도모하는 북한정권의 대내적 차원에서의 법제 정비와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대내외 정책으로서 농업과 기업소의 개선을 위한 법령변화를 파악

■ 북한 법령 분석 대상

- 북한에서 '12년~'16년 사이 제·개정된 법령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 결과적으로 김정은체제의 출범과 정권적 차원의 정책전개에 대한 분석틀 제시
- 북한의 법령 연구 추진에서 연구범위 설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북한 법전(원전)을 활용
- 2016년 북한 법전(이하 2016년 법전이라고 함)¹⁾은 '증보판'의 형식으로 2012년 출판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이후 4년의 기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을 수록, 기본적인 현행 북한법령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
- 이와 함께 2016년 법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하위 규정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2012년과 2014년 출판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법규집²⁾을 참고자료로 활용함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2016. 6. 15.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평양: 법률출판사, 2012. 11.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대외경제부문)」, 평양: 법률출판사, 2014. 9. 30.

II.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내용 및 특징

1. 2009년 헌법개정과 김정은 정권의 출범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채택(제정)되었으며 김일성의 일인지배체제의 헌법적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석제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음
 -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들어서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1992년과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1992년 헌법개정으로 당시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하나였던 국방위원회를 분리하여 독립된 장으로 개편하였음
 -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전 김일성은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추대하여 사실상 권력승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김정은 정권에서의 사회주의헌법은 각각 2012년, 2013년, 2016년에 개정되었으며, 북한이 법전을 통해 밝히고 있는 구체적인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음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수정보충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수정보충

- 2009년 개정 헌법의 의미와 내용
 - 김정은에 의해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김정일시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고한 김정일의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 2009년 개정헌법에 기초한 것임
 - 2009년 개정헌법은 형식적 면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관련 절을 신설하였음
 - 내용적으로는 주체사상과의 병기를 통한 ‘선군사상’의 지도이념화, 인민주권의 소재로 ‘군인’의 추가, ‘우리식 인권론’에 의한 인권존중 대목을 신설, ‘공산주의’

이념 삭제, 선군사상에 의한 국방부분의 위상 제고, ‘국방위원회 위원장’ 신설 및 국방위원회 임무와 권한 조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 및 ‘국방위원회’ 명령 관련조항 조정 등이 있었음

■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와 2009년 개정헌법

- 2009년 개정헌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염두에 둔 헌법적으로 권력체제의 이양과 함께 강고한 정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의 변화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정은 등장 직전에 단행된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³⁾

2. 201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 헌법 명칭 개정

- 이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었으나 이를 ‘김일성 김정일헌법’이라고 개칭하였음
- 이전 김정일시대에서 사실상 ‘김정일헌법’이라고 하여야 맞지만 김정일이 수령 김일성을 기리기 위해 ‘김일성헌법’이라고 명명하였듯이 김정은은 헌법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함

■ 핵보유국 명시

- 헌법서문에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라는 대목에 핵보유국을 명시하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대외에 과시하는 조치를 취함

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박정원,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의 특징과 평가”,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9, 253-289면 참조.

- 북한은 이미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선포한 바가 있으며 헌법에 이를 명시한 것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치적을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국가기관체계(권력구조) 일부 개편
 - 2012년 개정헌법은 김정일을 서문에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에 따라 국방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헌법상 권한은 이전의 국방위원장의 그것과 같음
- 배경
 -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직위명칭을 바꾼 배경에는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김일성에 대하여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함에 따라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주석직을 없애고 국방위원장직을 강화한 것과 유사한 태도와 과정을 취하였음⁴⁾
 - 1998년 개정헌법은 김정일이 군사부문의 권한을 장악하는 형식으로 하고, 국가원수의 지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고, 대내적 내치의 책임은 내각 총리에게 부여하여 이른바 집단지도제의 형식을 띠는 헌법상 권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음
 - 물론 실질적인 권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악하고 있었음. 이러한 집단지도제의 형태는 2009년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장의 종래 국가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일인지도제의 형태로 전환되었음

3. 2013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찬양
 - 서문의 개정을 통해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종엄의 상징이고

4) 이와 함께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의 직위도 당 총비서를 ‘제1비서’라고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였다.

영원한 성지이다”의 내용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개별법으로 법제화함

■ 12년제 의무교육제 규정 개정

- 2013년 헌법 개정에서는 제3장 문화 장에서 12년제 의무교육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당시 북한은 새로운 학제개편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적극 홍보한 바가 있음
- 이미 교육체제 개편으로 법령과 헌법 규범간 모순현상을 해소함

4. 2016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 배경

- 북한은 36년 만인 2016년 5월 16일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확고한 권력체제 형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이념과 수령의 권력체제, 국가기관체계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헌법 개정을 단행함

■ 서문

- 서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수령’과 ‘령도자’라는 수식어 삭제함. 이는 김정은 체제의 명실상부한 시대 구축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평가 할 수 있음

■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 개칭

-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원장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국가기구의 권한과 기능에 명칭을 일치
- 이러한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에는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확고한 권력체제 형성을 위한 수령의 권력체제와 국가기관체계가 개편내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방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방위’ 기능을 포함하여, 통일·외교·경제분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권력 기구를 개편

- ‘선군정치’의 상징으로 발전하였던 국방위원회는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동안 북한 국정을 주도한 국방위원회의 기능이 국무위원회로 변경하여 이관됨
- ‘국방’이라는 명칭 대신 ‘국무’라는 명칭을 부여해 ‘비상국가체제’가 아닌 ‘정상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음.
- 국무위원회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으로서, 당(黨) 정무국(전, 비서국)의 당적 지도 하에 정책 수립의 기능을 맡으며,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 중요 간부 임명·해임, 국가 비상사태와 전시상태·동원령 선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
- 한편, 앞서 언급한 2016년 법전(증보판)은 발행일을 2016년 6월 15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개정은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점을 보면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음. 사회주의헌법 제91조 1호에서 헌법의 수정, 보충의 권한은 최고인민회의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7차 당대회대회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이미 확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

〈2013년-2016년 사회주의헌법의 비교표〉

해당 조문	구분	2013년 사회주의헌법	2016년 사회주의헌법	비고
서문 (1문, 3문, 6문, 10문, 13문, 18문)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예시 1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예시 1문〉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 앞에 ‘수령’ 및 ‘령도자’의 직함이 삭제되었음 이는 1문, 3문, 6문, 10문, 13문, 17문, 18문에도 적용됨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대한 수령

구분 해당 조문	2013년 사회주의헌법	2016년 사회주의헌법	비고
17문 (뒤에서 두번째)	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과 조선인민은 <u>위대한</u> 김일성동지와 <u>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u> <u>영원한 수령으로</u>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표현한 것을 공통적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통일함
제6장 국기기관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 위원장 → 중앙재판소 → 중앙검찰소	공통적으로 제6장 국가기관에서 기관의 명칭 중 일부가 통일적으로 변경됨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u>국방부문의</u> <u>중요간부를</u>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u>국가의 중요간부를</u>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7. <u>전시에</u> <u>국가방위위원회를</u> <u>조직지도한다.</u>	제103조 제1항 2호 ‘국방위원회사업’이 ‘국무위원회사업’으로, 3호 ‘국방부문의 중요간부’가 ‘국가의 중요간부’로 변경됨 7호가 새로 신설되었음

구분 해당 조문	2013년 사회주의헌법	2016년 사회주의헌법	비고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u>최고국방지도기관</u> 이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u>최고정책적지도기관</u> 이다.	'최고국방지도기관'이 '최고정책적지도기관'으로 변경
제109조	<p>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u> 2. <u>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u> 3.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u> 4.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u> 5. <u>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u> 6. <u>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u> 	<p>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u> 2.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u> 3.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u> 	<p>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중 기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이 제1호로 통합되어 변경됨</p> <p>기존 5호와 6호의 내용이 삭제됨</p>
제123조	내각은 <u>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u> 이며 <u>전반적국가관리기관</u> 이다.	내각은 <u>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u> 이며 <u>전반적국가관리기관</u> 이다.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을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 변경

5. 김정은정권 하의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특징

- 헌법상 최고 수위에 등극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공화국(국가) 최고수위’인 국무위원장으로 추대
 - 이로써 김정은은 2016년 5월 6~9일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의 ‘최고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는데 이어, 같은 해 6월 ‘국무위원장’ 직책에 오르면서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 직책을 모두 차지함
 -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2012년 헌법 개정시에는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음
 -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과도기적 직위인 ‘국방위 제1위원장’을 탈피하기 위해, 사용이 불가능한 ‘국방위원장’이나 ‘주석’ 직제 대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함
- 대외적으로 김정은체제의 공고화와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
 - 명실공히 북한은 김정은에 의해 지도되는 국가로서의 위상과 자신의 지위를 명백히 한다는 점을 과시
 - 당대회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하고 헌법상 정권체제의 친정기반을 형성하였음을 보임
- 경제조항의 미개정
 - 김정은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9%의 경제성장을 보임.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경제발전의 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경제의 발전적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임
 - 실제로 북한에서는 시장화조치를 확대하고 기업소의 개혁을 통해 일부나마 자본주의적 경제원리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해 기존의 특수경제지대 외 지방의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개발구를 설치하여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은 1992년과 1998년 개정헌법에서 경제조항을 대폭 정비한 뒤 이제까지 경제조항의 변화는 없음. 북한경제의 내적 동인이 보다 커진다면 경제조항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Ⅲ. 김정은정권 하의 주요 법령 정비의 내용과 특징

1. 개 요

- 김정은정권의 북한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
 - 북한은 법전을 통해 법령을 그들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18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의 법령체계 및 분류와는 차이가 있음
 -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2011년 김정일의 사망으로 이루어진 만큼 2012년 이후 이루어진 법령의 정비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
- 우리의 법체계에 비추어 본 북한법령 분류
 - 이를 보면, △ 행정일반분야 △ 민사법 △ 형사법 △ 경제·산업·과학법 △ 외교·통상법 △ 농림·해양·수산업 △ 건설·교통·환경·소방법 △ 노동법 △ 보건·복지법 △ 교육·문화법 등으로 재분류 하여 볼 수 있음
 - 분야별로 최근 5년간의 북한 법령의 제·개정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최근 북한법령의 변화내용을 일별함
 - ※ 해당 시기 법령의 방대한 제·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서는 분야별 주요 내용의 변화를 통해 대략적인 특징과 동향을 분석함

2. 북한 법령의 분야별 제·개정 현황

- 위의 분류에 의해 북한법령의 변화 내용을 다음에 살펴봄
- 다만, 이하에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연호(‘주체연호’)와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의

5) 북한 법전에서는 ‘주권’, ‘행정’, ‘형민사’, ‘재판, 인민보안’, ‘계획, 노동, 재산관리’, ‘에너지, 금속, 지하자원’, ‘교통운수’, ‘농업, 수산’, ‘계량, 규격, 품질감독’, ‘인민봉사, 건설, 도시경영’, ‘국토, 환경보호’, ‘제정, 금융, 보험’,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사회복지’, ‘북남경제협력’, ‘외교, 대외경제’ 등의 부문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음

표현 방식(제정은 ‘채택’, 개정은 ‘수정보충’ 또는 ‘수정’이라 함)은 북한 법전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활용함

1) 행정 일반 분야

〈행정 법령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법제정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4호로 채택	부칙 포함
금수산태양궁전법	•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	
지방예산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7호로 채택	
도시미화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5호로 채택 •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공민등록법	• 주체104(2015)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국장법	•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평양시관리법	•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	

■ ‘법제정법’의 제정

- 법제정법은 총 8개의 장과 7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칙으로 1개 조문을 두고 있음. 2013년에 제정되어 북한 법제정의 체계와 함께 입법과정 및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입법체계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
-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용어정의)에서 법제정,⁶⁾ 부문법,⁷⁾ 규정,⁸⁾ 세칙⁹⁾ 등을

6)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부문법과 규정, 세칙을 비롯한 일반 의무적인 법문건을 만들거나 수정, 보충(제1호)

7) 최고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 헌법 제87조)이 헌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부문의 사회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형식(제2호)

8) 부문법을 전국적 범위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거나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제3호)

개념 정의하였으며, 제3조-제6조를 통해 법제정의 원칙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 구현, 인민의 의사 반영, 현실성 과학성 보장, 준법성보장 등을 명시하며, 해당 법령의 제정을 통해 북한 법제정의 체계와 함께 입법과정 및 절차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

- 법제정법에 의해 북한 사회주의법제사업의 전개와 법령체계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음
- 북한 헌법상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 각 법령간 효력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체계를 설명하고 있음

■ 정비동향

- 행정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김정은정권에서 행정체계의 개편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선대(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유훈을 따른다는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관리운영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임을 엿볼 수 있음

2) 민사법분야

< 민사법 분야 정비 현황 >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민사소송법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수정보충	

■ 민사소송법 개정

- 민사소송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제135조 1항의 내용을 추가
- 개정 내용으로는 제135조(재판심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서 “위법행위를 한 리용당사자나 사건관계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아 해당한

9) 부분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분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제하는 법형식(제4호)

제재를 줄수 없을 경우에는 구인관정을 하며 도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인관정을 집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위법자료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넘겨 처리한다”라는 대목으로 개정됨

■ 정비동향

- 북한 경제의 변화의 폭에 비추어보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 보이나 아직 민법의 개정은 없음
-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재판절차에서의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3) 형사법분야

〈형사 법령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3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6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9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 	2015년 개정의 경우 전문수록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8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 형법 개정

- 형법은 2013년, 2014년, 2015년에 개정
- 2013년 6월 “제19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 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 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 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학대궤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

- 2013년 9월 제52조(집행유예조건과 기간),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죄),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도죄), 제256조(미신행위죄)
- 2013년 11월 제154(밀주죄) 수정
- 2014년 4월 제41조(형벌량정을 가볍게 보는 조건)에서 “제4호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삭제하였고,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에서도 사회적교양처분의 주체에 대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를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으로 변경함
- 2015년에는 1월과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두 차례 수정보충이 이루어졌음

■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제110조의 일부 수정
- 개정 내용은 제110조(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에서 “의료처분결정을 할수 있다”로 표시하였던 부분을 “의료처분결정, 관정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

■ 형사법제의 정비 동향

- 형법의 수사 개정을 통한 보충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종래 사회일탈적 행위에 대해 묵인하였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범적 통제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4) 경제·산업·과학법제 분야

〈경제 산업 과학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재정법	•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인민경제계획법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수정보충	
기업소법	• 주체103(2014)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5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7호로 수정보충	
자재관리법	•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5호로 수정보충	
설비관리법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규격법	•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품질감독법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4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상품식별부호법	• 주체102(2013)년 3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19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수출입상품검사법	•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	
회계법	•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7호로 수정보충	
회계검증법	•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	
중앙은행법	•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상업은행법	•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자금세척방지법	• 주체103(2014)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57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보험법	• 주체104(2015)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56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Ⅲ. 김정은정권 하의 주요 법령 정비의 내용과 특징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전력법	• 주체104(2015)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지하자원법	• 주체102(2013)년 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	
광천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9호로 채택	
내화물관리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8호로 채택	
재생에너지법	•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채택	
중소탄광법	•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채택	
경제개발구법	•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2호로 채택	
량정법	•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과학기술법	•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1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소프트웨어산업법	•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저작권법	•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6호로 수정보충	
발명법	•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상표법	•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전파관리법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6호로 수정보충	
우주개발법	•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	
방송시설법	• 주체101(2012)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6호로 채택	
방송법	•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7호로 채택	

- 신법의 제정 및 기존 법령의 개정을 통한 대폭적인 법제정비
 - 경제·산업분야의 개정에서 자금세척방지법과 전력법은 전면개정을 통해 그 구성체계와 조문의 개선
 - 자금세척방지법의 경우 개정 전에는 총 32개의 조문으로 장 구분없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 후에는 총 5개의 장과 42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
 - 새로 제정된 법령인 광천법, 내화물관리법, 재생에너르기법, 중소탄광법은 산업분야의 에너지, 금속, 지하자원과 관련한 부분으로서 최근 북한이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비 동향
 -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제도적 체계를 갖출 필요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존 법령이 전면 개정되고 이와 함께 새로 제정되는 법들은 북한 체제의 정책추진의 법제도화라는 면에서 필요한 법령으로 볼 수 있음

5) 외교·통상 법제분야

〈외교 통상 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국경통과지점 관리법	• 주체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호로 채택	
출입국법	•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9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외국투자회계 검증법	•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10호로 채택	
무역화물검수법	•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7호로 채택 • 주체102(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50호로 수정보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무역집배용선 중개법	• 주체103(2014)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7호로 채택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채택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주체104(2015)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6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	• 주체104(2015)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1호로 수정보충	
대외경제중재법	•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수정보충	
합작법	•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합영법	•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무역법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 대외경제 교류와 법제정비

- 외교·통상분야에서는 출입국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대외경제중재법, 합작법, 합영법이 개정됨
- 외국투자회계검증법, 국경통과지점관리법, 무역화물검수법, 무역집배용선중개법,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이 새로 제정됨
- 2014년에 개정된 합작법과 합영법은 각각 제4조에서 합작의 금지와 제한대상으로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을 추가
- 한편 제정된 법률 중 무역화물검수법, 무역집배용선중개법,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의 경우 대외경제교류를 목적으로 무역을 원만하게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복합의 의도가 포함됨

■ 정비 동향

-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을 새로 만드는 동시에 기존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수요처의 요구에 응하는 측면과 함께 북한 스스로 법적 보호의 필요에 의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농림·해양·수산업 분야

〈농림 해양 수산업 분야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농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6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5호로 수정보충 	
축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9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수의방역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과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79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양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3(2014)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7호로 수정보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작물유전자원 관리법	•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6호로 채택	
잠업법	•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7호로 채택	
소금법	• 주체102(201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5호로 채택	

■ 농·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 정비

-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개정된 법령중 대표적으로 농장법을 살펴보면 농장법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수산법 및 축산법 등이 수차례 개정됨
- 이처럼 농·수산분야 관련 법령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 개정된 현황을 통해 한이 해당 분야에서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관심도가 높음을 엿볼 수 있음

■ 정비동향

- 농림 수산 분야의 법령은 비교적 북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법령의 정비를 통해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의 편의와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 강화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음

7) 건설·교통·환경·소방법제 분야

〈건설 교통 환경 소방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건설법	•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8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철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7호로 수정보충 	
해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해상집수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항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0호로 수정보충 	
배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8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98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선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98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해사감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건설감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3(2014)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호로 채택 	
항무감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8호로 채택 •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종합무역장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5호로 채택 	
대기오염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7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0호로 채택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3(2014)년 6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6호로 채택 	
독성물질추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 	

Ⅲ. 김정은정권 하의 주요 법령 정비의 내용과 특징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화약류취급법	•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	
폭발물처리법	• 주체104(2015)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0호로 수정보충	
도시경영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도로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수정보충	
환경보호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바다오염방지법	• 주체103(2014)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대동강오염방지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	
자연보호구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살림집법	•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원림법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산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3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주체103(2014)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9호로 수정보충 	2015년 전면개정
하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 교통분야 법령 정비

- 대표적으로 교통분야의 개정을 살펴보면 철도법(2015년), 해운법(2013년), 해상 짐수송법(2013년), 항만법(2013년), 배안전법(2015년), 선원법(2015년), 해사감 독법(2013년)이 개정
- 2013년 개정된 해운법과 해상짐수송법의 경우 ‘련대수송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신설하면서 조항이 수정보충되었으며, 2015년에 개정된 철도법의 경우에도 길을 건널때에 주체가 ‘주민’만이 아닌 ‘자동차·우마차’라는 표현을 추가
- 2015년 개정된 철도법은 ‘철길주변에서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추가

■ 정비동향

- 교통 운수 등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은 관련 행정체제의 개선 내지 개편 등에 따른 수정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최근 북한경제의 개선에 따라 교통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 것을 엿볼 수 있음
-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환경보호와 밀접한 다수의 법령 정비를 통해 이전 법령 대비 북한 당국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보다 증대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배안전과 선원관련 법령의 보완은 북한에서 수산 및 해양분야의 변화움직 임을 볼 수 있는 부분임

8) 노동법제 분야

〈노동 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로동보호법	•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	
로동정량법	•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4호로 수정보충	
사회주의로동법	•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보충	
편의봉사법	• 주체103(2014)년 1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호로 채택	

■ 북한 노동자의 복지 개선 반영

- 노동분야에서는 2014년 로동보호법, 2015년 사회주의로동법, 2015년 로동정량법이 개정
- 로동보호법은 제41조(정양소, 휴양소의 조직, 물자보장)에서 개정전 단순히 휴식만을 보장했던 것과 달리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운영체제를 바로세워”라는 문구를 추가, “정양소, 휴양소에 필요한 물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자보장 추가
- 로동정량법은 제21조(림시로동정량의 적용)에서 개정전 림시로동정량을 “1개월”을 적용하였던 것에서 “3개월”로 늘려 적용

■ 정비동향

- 노동분야에서의 각 법령의 개정은 주로 북한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내지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국제사회, 특히 UN의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개선 권고가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형식적인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이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점을 볼 수 있음

9) 인권·보건·복지법제 분야

〈보건 복지 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장애자보호법	•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보충	전면개정
아동권리보장법	•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여성권리보장법	• 주체104(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	
의료법	•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	
전염병예방법	•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식료품위생법	•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	
공중위생법	•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	
담배통제법	• 주체101(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	

■ 장애인 및 여성·아동 등 인권보호 법령 정비

- 북한은 인권관련 법률정비를 강조하여 왔는데 각 2013년 장애자보호법, 2014년 아동권리보호법, 2015년 여성권리보장법 등을 개정하였음
- 2013년 개정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권리보장원칙의 강화, 장애자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의 조직과 관련 조항 신설, 후원 및 전문가 양성 관련 조문 신설
- 2015년 개정 ‘여성권리보장법’은 산전·산후 휴가기간 확대에 관한 조문을 수정 보충함

■ 정비 동향

- 장애인권리, 아동보호, 여성권리 보장 등은 앞서 노동권의 보호와 함께 북한에서 인권보호법령으로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장애인보호법의 개정은 북한 당국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함
- 그 밖의 의료법 등의 개정은 다른 행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행정체제의 변화와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것임

10) 교육·문화법제 분야

〈교육 문화 법제 정비 현황〉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고등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보통교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 •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 	
어린이보육 교양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8호로 수정보충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3호로 수정보충 	
교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8호로 채택 	제정
문화유산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4호로 채택 	이전의 문화유물 보호법 삭제

해당 법령	제·개정 현황	비고
공원, 유원지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2(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1호로 채택 • 주체103(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 	
민족유산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제정

■ 교육 관련 법령의 제·개정

- 2012년에 새로이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로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가 단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법령에 반영
- 교육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12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 후 사회주의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을 개정한 바 있음
- 특히, 2015년 교원법의 제정을 통해 교원양성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
- 다른 교육법령에 교원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교원법을 제정하였음

■ 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 문화유산보호법(문화유물보호법 대체)과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문화 관련 법령을 정비
- 북한의 문화재 보호와 무단 반출 등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강화함

■ 정비 동향

- 김정은 정권은 주민에 대한 체제우수성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교육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여 왔음
- 북한의 문화 및 문화재 보호문제는 체제수호와 연관하여 강조되는 부분임

IV. 평가와 과제

1. 김정은 체제의 확립과 대내외 정책변화의 반영

- 새로운 정권 출현에 따른 입법 수요의 증대
 - 2016년 법전(증보판)을 살펴보면,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2012년부터 4년의 기간 동안 31개의 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의 187개 중 81개의 법을 개정하여 전체적으로 약 43%에 해당되는 양의 법제정비를 단행함
 - 시기적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의 체제공고화 시기로 해당 시기의 입법은 김정은 시대에 입각한 법제정비라고 평가됨
- 법제도화를 통한 통치방식의 변화
 - 김정은 정권 이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법제정비는 북한정권이 앞으로 이진 시대와 달리 교시에 의한 통치에서 형식상 법치에 의한 통치로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국정운영의 법제도화라는 점에서 북한의 법제정비의 동향과 내용은 중요한 연구 대상임
 - 법의 제·개정이 단기간의 시간동안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평가될 수 있으나,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실을 법제도화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살필 수 있음
 -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진 이른바 ‘사회주의법제의 사업’의 강화와 ‘사회주의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김정은 시대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음
 - 우리가 말하는 법치주의와는 다르지만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보다 유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함

2. 북한 법령의 체계정합성 개선

■ 법령의 분화

- 예컨대 방송시설법과 방송법의 제정은 종래 체신법의 일부로 규정되었던 사항이었으나 통신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방송관련법의 제정으로 법제분화의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김정은 시대의 대외경제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법제를 살펴보면, 이전 특구법제와 비교하여 볼 때 경제개발구법의 제정 이후 비교적 단시간 안에 경제개발구법의 하위규정들을 제정하고 있음
- 종래 하위규정의 미비 내지 미공표로 인해 기본적인 규정의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법률 제정 후 하위규정의 정비를 체계화하고 있음

■ 사회주의헌법의 규범성 강화 (헌법적 근거와 현실의 상충문제 해소)

- 사회주의 헌법과의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관련법제의 제정을 통한 개별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하위법률의 법체계화를 강화함
- 예컨대 교육법제, 금수산태양궁전법, 우주개발법 등을 보면, 헌법적 근거를 두고 바로 관련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과 일치하도록 해당 헌법규정을 개정함
- 예컨대 우주개발법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법령¹⁰⁾을 채택한 것과 연관되어 있음 (2013. 3. 31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

■ 전면 개정을 통한 법령구성 체계 및 내용 개선

- 전면 개정 법령으로는 2012년에는 1개(도서관법), 2013년에는 6개(과학기술법, 도로교통법, 상품식별부호법, 장애인보호법, 출입국법, 소프트웨어산업법)
- 2014년에는 5개(기업소법, 바다오염방지법, 발명법, 자금세척방지법, 환경보호법)

10)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이른바 ‘4·1 핵보유법령’, 총 10개조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2103. 4.1)에서 법령으로 채택. 2016년 법전(중보판)에는 미수록.

- 2015년에는 10개(무역법, 보험법, 배안전법, 산림법, 선원법, 전력법, 축산법, 품질감독법, 형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법령을 들 수 있음
- 처벌규정의 체계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근거 명확화)
 - 처벌 관련 조문의 세분화와 행정적 체계화를 개선함
 - 행정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는 예를 들어 배안전법의 경우 제72조에서 11개의 호로 규정하던 것을, 2015년 개정 배안전법에서 제56조에서 16개의 호로 더 세분화하였음

3. 북한의 대내외 환경 및 정책 변화를 반영한 법제도화

- 북한주민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대응 법제화
 - 새로이 형성되는 북한주민의 생활영역에서의 규범적 통제를 위해 일부 법령의 입법 또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북한사회의 현실 변화 상황을 반영한 법제정비 추진
 -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법제정비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 사회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 북한의 지방행정기능의 강화 조치
 - 북한의 경제회생 내지 발전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경제관련 법제를 수시로 수정보완하고 있음
 - 일방적인 중앙통제 방식의 명령적 체제에서 나아가 일부 실용적인 차원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현실변화의 상황에 대응하여 행정의 지방이양의 움직임이 살필 수 있음
 - 경제개발구법에 의하면, 지방의 사정에 맞추어 경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방인민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부나마 지방 행정 기능을 확대하여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4. 북한법령의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제고

-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에서부터 확대된 법제사업의 강화를 이어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제정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북한의 최신 법령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정책전개의 내용과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동시에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법제의 하위규정 분석의 중요성
 - 북한은 앞으로 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정비 가운데 종래 문제점 내지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하위법령의 부재 내지 미공표에 대해서도 많은 하위규정의 정비가 예고되고 있음
 - 보다 정확한 북한법령의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법제의 하위규정의 수집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임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⑩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및 법령 정비 동향과 평가**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발행인 이 익 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팩스 : (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